

## 겸영업무 보고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: 2025년 11월 27일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5년 11월 27일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7, 3층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7, 3층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  - 1) 대출이 필요한 고객과 대출 실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대출성사를 위한 업무를 진행
    - 자금조달이 필요한 법인고객과 대출 실행을 희망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(은행, 저축은행, 캐피탈 등)을 연결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원
  - 2) 양 당사자간 대출관련 주요 금융조건 협의 및 조정
    -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 관련 조건(금리, 대출기간, 상환구조 등)을 당사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
  - 3)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중개 또는 주선

※ 단,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,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, 당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대출에 참여하는 건이나 일반법인, 개인간 대출의 중개업무는 제외